

‘국가안보’ 논리에 질식된 인권

-95년 한국 인권상황 해설-

1. 들어가는 말

95년 국제사회는 인권의 영역 안에 발전권을 비롯한 많은 새로운 권리를 포용하려는 시도들을 계속했다. 2월에 열린 유엔인권위원회 51차 회의에서는 환경의 문제나 소득분배의 문제 등에도 특별보고관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의하였다. 또, 3월에 열린 세계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는 (비록 인권의 문제에 대한 중요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전권을 기본적인 인권으로 인식하는데는 이견이 없었다. 이제 세계는 전통적인 의미의 자유권적 인권영역을 현저히 뛰어넘어 원론적 수준에 머물던 사회·경제적 권리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찾으려는 뚜렷한 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경향은 점차 가속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제3세계 개발도상국가의 한 전형적인 발전모델로 인식되는 한국의 95년 인권상황은 기본적으로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완강하게 저항하려는 듯이 보였다. ‘삶의 질’ 문제 또는 ‘인간중심의 개발’이 특히 대형참사의 언저리에서 조금씩 논의되긴 했지만, 아직도 인권에 대한 중요한 담론은 정치적 구속자의 문제 등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럴 수 밖에 없는 나름의 사정은 있었다.

94년 11월 아펙회의 이후 국정의 지표로 제시된 ‘세계화’는 WTO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본가의 이해를 대변한 구호였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체질을 생각할 때 ‘세계화’ 구호는 개방 요구를 강화시키는 선진국제사회의 물결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되는 저가품의 세계시장 공략에서 국내 자본이 살아남기 위한 총력전의 호령에 다름이 아니다. 당연한 일로서 김영삼정부는 노골적인 자본 편들기에 적극 나설 수 밖에 없다. 현 정부의 일부 개혁정책마저도 자신의 정권의 입지 강화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었을 뿐이며, 여기에는 기본 계층에 대한 어떤 배려도 자리잡을 수가 없었다.

‘삶의 질’이란 화두는 애당초 그와 모순되는 방향인 ‘세계화’와 함께 강도높게 강조된 새로운 구호였지만, 그 내용은 아직껏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가관인 것은 김영삼대통령 자신이 사회개발세계정상회담에 참가하여 소리 높여 주장했던

방침이 국내에서는 전혀 정책으로 입안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민중의 생존권요구를 압살하는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방비는 늘리면서도 사회복지 부문 예산은 갈 수록 군사정권시절 보다 낮은 비율로 억제해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부가 ‘삶의 질’의 문제를 말하기는 커녕 사회권을 요구하는 국민을 힘으로 누름으로써 그 자유권마저도 유린하는 기조로 나아갈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95년 처음 시행된 고용보험문제도 사실은 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했다. 이런 정책기조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란 변함없이 극성을 부리는 국가보안법, 노동자·빈민 등 기층 민중들의 생존권 요구 압살과 일상화된 공권력의 남용 밖에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이리하여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실현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가 세계사적으로 우리의 시야 속에 이미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민적 정치적 자유의 실현을 위한 치열한 싸움에도 매달려 있어야 하는 양면전을 강요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 어느 때 보다 인권운동가의 부담과 책임은 크다고 해야 할 것이다.

95년 인권상황을 규정하는 내외의 사정을 이와 같이 이해하면서, 우리는 마치 위조지폐 처럼 유통하는 “한국의 인권상황이 현저히 나아지고 있다”는 따위 해괴한 설명은 현정권이 대외용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신화’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한마디로 현 정권에는 자본가 위주의 경제정책, 즉 반인권정책은 있을 지언정 인권정책이라는 것은 전혀 있지도 않다.

2. 주제별로 본 1995년 인권 상황

1) 반 인권적 억압 법제에 대한 개폐

반인권적 억압법제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단지 정치범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이 나라 모든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인격적 발전을 저해하는 초헌법적인 영향력을 가진 법률이라는 의미에서 그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도전도 어느 해보다 만만치 않았다. 지난 여름에 전개되었던 대대적인 장기수 석방 캠페인과 가을에 있었던 대규모 국제심포지엄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은 상당한 수준으로 고조되었다. 유엔과 국제엠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적인 인권단체들은 95년에도 강도높게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요구했으며, 많은 국가보안법 조직사건들에서 법원은 대체로 형량을 적게 매기거나 잇따라 집행유예로 석방하곤 했다. 지난 2월에는 「국제사회주의들」 사건을 심리했던 부산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 8조에 대한 위헌제청을 했으며, 서울지법은 이창복 전국연합 의장과 박치관 월간 <사람과 일터> 편집장의 국가보안법사건들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대중교 종정 안호상씨의 방북사건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않은 반면, 박용길 장로의 방북은 국가보안법으로 엄한 처벌을 받는 등 국가보안법 적용의 석연치 않은 이중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현 정권은 이 법의 폐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개정불가의 입장을 고수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이 법이 가진 무소불위의 만능성을 과거 군사정권들 못지 않게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80년 신군부의 집권시나리오의 한 포석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개악되었던 노동법은 그동안 노동운동을 고립시키면서 자본가들의 최대의 이윤을 보장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돌아왔다. 95년은 이 악법을 고수하려는 현 정권과 이 법, 특히 제3자 개입금지조항의 폐지를 요구하는 각 방면의 요구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팽팽히 맞선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5월에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3자개입금지, 공무원단 결권, 복수노조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는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요구했으며 유엔 인권위원회 역시 제3자 개입 금지조항과 관련 손종규씨의 제소를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이 조항의 시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준비위가 '제3자개입금지' 조항을 주된 타격 목표로 세우고 임투기간 중에 광범하게 '제3자 개입'(제3자 개입금지 어기기)을 선언하는 공세를 취한 사실 또한, 정부의 완강한 노동법 개정 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제3자 개입 금지조항 폐지논의만은 머지않아 구체적 일정에 오를 조짐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희망적 사건들이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시행, 여성발전기본법, 행형법과 행형법 시행령의 개정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법률은, 전형적으로 행형법 개정에 나타나듯이, 역시 본질적인 인권침해구조를 그 자체를 살짝 비껴감으로써 인권 개선의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고 평가된다. 결국 95년 한 해동안 정부의 반인권적 법제의 개편작업은 미미한 것이었고, 현 정권도 과거의 악법 위에 안주하고 있다는 주장은 여전히 정당성을 갖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양심수, 장기수의 문제

95년 양심수의 구속은 두 시기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첫 시기는 6월27일 있었던 35년만의 지방자치제 선거까지였다. 이 첫 시기는 민주노총의 건설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나선 노동자들의 임투시기와 맞물려 5,6월에 가장 많은 구속자를 낸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공안당국은 부산대 자주대오, 경기대 자주대오 등 무더기 구속을 감행했다. 이와 같은 조직사건들에는 뚜렷하게 공통된 특징이 보이는 데, 즉 구속된 이들은 대개 학생회 활동을 중지하거나 운동을 정리한 이들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재학중이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이었다. 게다가 이들 사건 피고인들에게는 처음 긴급구속 당시에는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내용이 씌어졌다가 대체로 이적표현물 소지나 고무찬양 혐의로 축소되어 한 사건에서 1,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특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방자

치계 선거를 앞두고 보수세력, 공안세력이 입지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고려에서 과거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억지로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두번째 시기는 소위 '부여간첩' 사건과 관련되어 진행된 '간첩 불고지' 시기였다. 10월24일 부여 정각사 주변에서 고정간첩과 접선하려다 발각되었다는 남파간첩 사건은 95년이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공안탄압의 핵심으로 자리를 차지했다. 11월 6,7일 청년운동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이인영, 이상호, 함운경, 허인희 등은 이른바 '부여간첩' 김동식을 만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불고지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사건 자체는 여러모로 황당한 것이었지만 이것은 곧 박충렬, 김태년씨의 '간첩사건'으로 확대되어 세상을 긴장시킨다. 이들에게는 간첩에 의해 포섭, 지령을 받고, 암약해왔다는 혐의가 씌어졌지만, 안기부는 20일동안의 수사를 통해서도 끝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이적표현물 소지 정도의 혐의로 기소할 수 밖에 없었다.

'부여간첩' 사건은 또한 김동식이 과거 남한조선노동당의 이선실과 함께 남파된 적이 있다는 안기부의 발표로 92년의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의 악몽을 되살렸다. 실제로 이 시기에 '남한조선노동당'의 재건혐의로 27명, 남한조선노동당 하부 조직인 애국동맹 사건으로 7명, 5.1동맹 사건으로 13명이 구속된 것이다. 또, 범민련 관련자 31명의 느닷없는 구속도 이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범민련 사건 구속자 대다수가 도피하기도 어려운 고령자들이라는 점에서 인도적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임신 8개월에 이른 고애순씨를 구속한 것은 지나친 비인도적 처사라고 비난받아 마땅했다.

95년 한해동안 구속된 양심수는 12월 5일 현재 총 595명(민가협 집계, 이하 양심수는 통계는 모두 민가협의 집계임)에 이르렀다. 이중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269명(약 45%)으로 나타났다. 김영삼 정권 출범 첫해인 93년도(2월25일부터)에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된 사람은 총 195명(국보법105명), '신공안정국'의 광풍이 몰아친 94년도에 총 780명(국보법 389명)였던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95년 한국의 인권상황이

적용법조별 양심수 구속 현황

(95년12월5일 현재)					
총	국가보안법	집시·폭력	노동관계	3자개입 금지	특수공무 집행방해
352명	266명 75.5%	50명 14.2%	42명 11.9%	6명	20명 5.6%

95년도 월별 구속자 현황

(95년 12월5일 현재)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총구속자	13	29	38	36	109	96	53	67	29	52	73
국보법	10	22	27	13	40	23	17	32	7	20	58

아직 94년의 신공안정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현정부의 출범 이후 구속된 양심수는 통털어서 1,570명이다. 이들 가운데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전체의 48.5%인 763명이었다. 12월5일 현재 구속 수감중

인 양심수는 352명이다. 이들중 학생은 91명, 노동자 47명, 군인·전경 11명, 재야 및 기타 139명, 장기수 63명, 농민 1명이다(국가보안법 위반 양심수는 전체 352명의 75.5%인 266명). 구속자 수에 비하여 현재 실제로 수감되어 있는 양심수는 상당히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법원의 1심 선고 단계에서 상당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났기 때문이다. 이것은 김영삼 정권의 공안당국이 정치적 고려로 인한 무리한 구속을 일삼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

장기 복역 양심수는 95년 12월5일 63명(7년 이상 구속자)이었다. 이중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34명, 복역연수 20년 이상의 초장기수는 24명으로 나타났다. 95년 8월 15일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씨등이 석방되었어도 여전히 한국은 '장기수의 나라'이다. 정부는 해방 50주년을 맞아 이른바 대석방과 사면조치를 '단행' 했지만, 이때 풀려난 양심수는 25명(전체 양심수의 5%)에 불과했다. 더구나, 김선명씨등은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기 때문에 언제고 다시 수감될 수 있는 처지에 있다.

3) 여전히 계속되는 경찰, 비밀수사기구에서의 불법행위

지난해 정부는 1월9일, 계속 미루어오던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하였다. 개인청원권과 국가간 문제제기권을 유보한 고문방지조약은 2월8일부터 발효되었다. 하지만, 다른 인권조약들과 마찬가지로 고문방지조약이 국내에서 제대로 이행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협천만한 일이다.

유엔인권위원회 자의적 구금실무분과는 조작간첩사건으로 알려진 이장형씨를 비롯해 구국전위 사건으로 구속된 안재구씨등에 대한 자의적 구금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94년 10월에 있는 황석영씨등에 대한 자의적 구금 결정에 이은 것이다. 이런 유엔의 결정에서도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구금은 매우 자의적이다. 과학적인 물증수사보다는 예단과 짜맞추기 수사의 관행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가까이 다가가기에는 아직 어렵도 없는 형편이다.

지난 2월 부산국교생 강주영양 사건 1심 판결에서 3명의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우리나라 경찰의 뿌리깊은 고문관행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였다. 경찰은 94년 지존파 사건 직후 범죄에 대한 강경한 대처 가운데 부산 국교생 유괴사건 '범인'을 체포하는 개가를 올렸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은 경찰의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했음이 법원에서 인정되었다.

한편, 법원은 지난 86년 보임·다산사건으로 수배중 수속돼 고문을 당했던 정신적 고문피해자 문국진씨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도 경찰의 고문행위를 인정, 1억4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부산 유괴사건 판결과 함께 문국진 사건의 판결은 경찰의 고문관행에 쐐기를 박으려는 인권지향의 판결로써 환영할 만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승소 사례는 아직도 '하늘의 별 따기'임을 잘 알고 있다.

출소 장기수의 집과 재야 노동단체에서 발견된 도청기들은 아직도 수사기관이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 잠안재우기 수사나 철야수사는 아

직도 당연시되고 있고,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권도 제대로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경찰의 조치원파출소의 고려대 난입 총기발사 사건, 서울 번동에서 일어난 성폭행과 총기난사사건,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한 경찰관들의 폭행과 이에 맞선 이형기씨 분신 사건은 이 나라의 경찰이 '민주경찰'로 평가받기에는 아직 멀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4) 노동운동에 대한 총체적 탄압

노동자들은 지난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의 줄기찬 투쟁의 성과를 기초로 95년 11월11일 역사적인 민주노총을 출범시켰다. 조합원 40만을 확보한 민주노총은 숫적으로는 한국노총에 뒤지지만, 민주노조운동을 주도해왔던 대규모 사업장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질적인 면에서는 한국노총을 앞서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불인정(11월23일 노동부는 민주노총의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이라는 벽에 부딪친 민주노총이 합법적인 지위를 확보하기까지는 순탄치 않은 경로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출범했다고 하나 95년의 노동인권상황은 매우 열악한 것이었다. 5월19일 김영삼 대통령은 한국통신 노조의 준법투쟁을 '국가전복 기도'라고 규정하였고, 이런 발언을 통해 한국통신 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자행했다. 파면 18명, 해임 18명, 정직 27명에 이르는 증징계와 총 56명의 조합 간부 구속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파업을 결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법에 규정된 테두리에서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는 것마저 '국가전복 기도'라고 몰아부친 한국통신 노조 사건은 김영삼 정부의 노동운동에 대한 시각을 정확히 보여주었다. 이는 94년 전지협 철도 노동자들의 탄압방법과 같은 것으로 WTO 체제 이후 노동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이라는 '개혁'과는 거리가 먼 김영삼 정권의 본질적인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준 사건이었다.

김영삼 정권의 노골적인 자본 편들기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근로자파견법을 관철 시키려 했던 것에도 잘 드러난다. 인신매매와 다를 바 없는 근로자파견제도가 목표로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약화, 즉,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약화시켜 자본의 자유로운 노동통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근로자파견법 제정 기도는 노동계의 거센 저항에 부딪쳐 결과적으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96년에 정부는 다시 이의 제정을 위한 다각적인 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95년 한해동안 일어난 노동탄압의 대표적인 사례는 4월 전해투 노동자들이 부상당해 입원해 있던 사당의원에의 경찰 난입사건, 5월 현대자동차 해고노동자 양봉수씨의 분신을 계기로 한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대량구속, 6월의 대우그룹의 신경영전략을 비판한 대우조선 박삼훈씨의 분신, 12월 병역특례해고노동자 조수원씨의 자살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정부의 강경탄압 일변도에 봉착하는 지점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끊어서라도 이를 태개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정부의 노동정책의 변화없이는 이런 불행은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자본에 대한 노골적인 편들기에 법원이 적극적인 공범자로 가담하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다. 회사측의 노조 간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회사의 요구액을 전액 인정하는 경향과 12월 있었던 대법원의 무노동무임금 판결은 그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손해배상청구사건은 12건으로 서울지하철 노조 51억여원, 한진중공업 노조 4억4천만원, 삼미특수강 노조 30억 등이다.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노조의 간부들에게 손해배상을 물리게 하는 것은 저열한 수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난해 부각된 중요한 노동인권문제에 산재문제가 있다. 지난 87년 노동자대투쟁 과정에서 노동쟁의로 노동자 1천명당 노동손실일수는 756일이었던 것에 비해 그해

최근 산재 현황

(95년 4월, 노동부 발표)

	재해자	사망자
1992년	107,435명	2,429명
1993년	90,288명	2,200명
1994년	85,948명	2,678명

산재해로는 4,570일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듯이 산업재해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큰 것이었다. 아래의 표에 나타난 것처럼 산재는 일반적으로 줄어드는 반면에 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재해운동으로 기업체가 산재발생을 속이고 있고, 또 5인 이하 사업장의 산재는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 산재 통계는 우리의 산재현실을 지극히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할 수 것이다. 이에 맞서 조선노협이 연초 상경해 벌인 시위는 산재 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5) 철거민, 노점상들에 대한 탄압

정부의 노골적인 자본 편들기는 도시빈민들의 생존권에 가해지는 압박을 볼 때 더욱 명확해진다. 지난해 철거과정에서 일어난 3월 서울 금호지구의 박균백씨 분신사건(생존), 4월 봉천동 전철순씨 성폭행 사건, 11월의 인천 아암도 노점상 이덕인씨 사망사건은 이의 단적인 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철거폭력은 극에 달했다. 서울 봉천동 철거현장에서 일어난 전철순씨 성폭행사건은 이 나라의 인권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철대위 위원장 역할을 했던 이 아줌마에게 철거반원들은 팬티를 벗겨내리고, 자궁안에다 연탄재를 쳐넣었다. 집단구타와 성희롱은 말할 것도 없었다. 전씨는 철거폭력반원들을 고소했지만, 이들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전씨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철거용역회사는 깡패들을 고용하여 재벌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철거비용을 받는다. 봉천동에서 철거를 맡은 적준개발은 가장 대표적인 철거용역회사이다.

95년도 금호지구, 봉천동, 암사동, 상계동, 번3동, 무악동 등으로 이어진 철거과

정은 마치 국민을 상대로 한 일종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 주로 새벽녘에 철거지역 외곽을 완전히 봉쇄한 가운데 철거용역반원들을 대거 동원, 사람이 잠자고 있는 집도 포크레인으로 부수고, 어린이, 여성, 노인 할 것 없이 무참히 짓밟는 이런 철거폭력은 공권력의 비호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경찰은 철거가 진행될 때 철거용역반을 보호하고, 외곽에서 철거민들을 도우려고 오는 이들을 철저히 차단한다. 철거민들이 고립적인 싸움을 하다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다. 경찰은 한걸음 더 나아가 직접 철거현장에 뛰어들기도 한다. 지난 번3동에서 여학생을 성희롱하고 충기를 난사했던 것은 바로 경찰이다.

6)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

94년 9월 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가 10만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1월초 명동성당에서 목에 쇠사슬을 걸고 텐트농성을 벌인 외국인산업연수생 13인은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던지면서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현재화시켰다. 인력관리회사에 의하여, 그리고 작업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불법감금, 강제노동, 폭행, 성폭력, 체임, 여권압수 등 반인권적인 행태는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의 주요 언론사들의 주목을 끌었다. 명동성당의 농성자들은 여권반환, 체불임금 지급, 근로조건 개선 등의 약속을 받았지만, 이것은 다시 '작업장 이탈-->강제출국'으로 귀결되었다.

보건복지부의 외국인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연금가입 허용, 대법원의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 판결 등 약간의 변화가 잇따르기는 했으나, 아직 외국인노동자들이 그 변화를 피부로 확실히 느끼기에는 이르다. 지난해 9월6일 필리핀 노동자들이 산재보상과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의 철폐를 요구하며 첫 반한 시위를 벌이는 등 산재를 입고 추방당한 여러나라 외국인노동자들이 본국에서 보이는 움직임은 한국의 양심에 대한 심각한 경종이 되고 있다. 외국인산업연수생인권문제 공동대책위가 벌였던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입법청원운동 등은 주목에 값하는 것이었다.

한편, 95년에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현지에서 자행하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되었다. 참여연대가 인도네시아를 방문, 현지 한국기업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것은 앞으로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을 예감케 한다.

미군인 범죄사건 처리내용

(95년 9월 법무부 제출 국정감사 자료)

구 분	연도별	발생	처리내용				미제 사건
			계	재판권 행사	재판권 포기	미측 관할	
92년	건	642	642	10	631	1	
	명	725	725	10	714	1	
93년	건	624	624	13	607	4	
	명	721	721	21	696	4	
94년	건	711	710	18	682	10	
	명	812	808	25	773	10	
95년	건	499	498	26	452	20	
	명	567	566	33	513	20	

7) 주한 미군 범죄

94,5년 연말아 집중적으로 나타난 주한미군범죄의 문제점은 한국경찰의 소환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군측의

미군인 재판권 행사사건 처리결과
(95년 9월 법무부 제출 국정감사
자료, 단위:명)

구분 \ 년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1-8월)
구공판	15	7	14	14	13
구약식	1	3	7	10	15
이송 (미군당국)	2	-	-	1	-
수사중	-	-	-	-	5
계	18	10	21	25	33

수사재판권 거부로 사건의 시비조차 따질 수 없는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때문이었다. 94년 1월 주한미군 전용 택시운전기사 폭행사건, 같은 해 10월 발생한 한국인 세 모녀 폭행사건 등은 재판조차 이뤄지지 못한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95년 5,6월에 충무로 지하철역 미군들의 집단폭행사건등 미군범죄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났고, 이러한 미군범죄가 언론을 통해 집중 부각되었다. 그러나, 오히려 미군측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한국언론이 반미감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서는 형편이었다. 이것은 일본정부가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미군들이 국민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범행을 저지른 미군범인을 즉각 인도토록 하는 미군지위협정문서를 미국과 교환기로 한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 폭행의 피해자인 조정국씨의 용산 미군기지 앞 단식농성, 93년 윤금이씨 살해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하반기부터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을 위한 한미정부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결과는 미지수다.

이런 민간의 노력과 여론의 악화로 인해 미군인 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88년까지 1%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89년 이후 근소하게 증가하여 92년 1.4%, 93년 2.9%, 94년 3.1%, 95년 9월말 현재 6.1%의 재판권 행사율을 보였다.

8) 정신대 문제를 비롯한 여성문제

95년에는 6월27일의 지방자치선거와 9월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4차 북경세계여성대회 개최를 전후해 여성계가 활발하게 움직였다.

북경세계여성대회를 준비한 「한국여성NGO위원회」는 보고서에서 91년 6월 IPU가 집계한 세계 178개국 여성의원 비율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 세계평균 11%에도 못 미치는 2% 수준으로 세계 113위이다.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 71명, 광역의회 13명,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회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인한 42명의 진출 등 127명이 진출하여 전체의석의 2.2%를 차지하게 되었다. 전체 공무원에서 여성 비율은 78년 16.8%에서 93년 25.6%로 증가했다. 그러나, 고위직은 2%의 수준을 넘지 못한 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숫적인 측면에서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들은 주로 여성관련 업무와 별정직, 임시직, 하위직 등에 배치됨으로써 여성의 능력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말 서울에서 '전후 50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았는가?' 라는

주제로 열린 '제3차 일본군 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에는 일본, 대만, 필리핀 등에서 온 60여명을 포함해 4개국 2백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일본정부에 민간기금안 철회와 특별법 제정 촉구, 국제중재재판소 중재에 응할 것 등을 촉구했다. 뒤이어 7월8일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쿠마라스와미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방한했다. 이런 움직임은 제4차 유엔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쟁 중의 성폭력 문제로 규정한 행동강령을 채택하는 성과로 귀결되었다.

이런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0월, 여성출산, 생리휴가 무급화를 추진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노동정책의 후퇴 속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당하는 고통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94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여성노동자는 남성노동자의 56.7% 밖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근무형태는 임시, 시간제 노동, 용역노동 등 비정규직 노동 분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전체 여성취업자의 40.8%를 차지하고 있음은 여성 고용 현실의 성차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또, 94년 서울지법에서 승소한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이 서울고법에서 패소한 것은 직장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성희롱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인권 보장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9) 과거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과거청산)
95년 인권상황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불처벌에 대한 단죄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수수 문제로 구속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월 초 5.18 내란 등으로 구속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뒤이어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과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이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95년 7월18일의 검찰의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불기소 결정 이후에는 급속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국민적인 투쟁이 전개되었다. 170일이 넘게 장기간 진행된 명동성당 농성, 전국 100개 대학 6,678명교수들의 시국선언과 서명, 천주교 신부들의 단식농성과 12만 3,464명의 신도 서명, 471명의 조계종 스님들의 서명, 예장목회자 550명의 시국선언, 2만에 이르는 교사들의 서명과 선언, 100만이 넘는 대중 서명운동, 9차례에 걸쳐 전국에서 개최된 국민대회, 항고·재항고·헌법소원 등의 법적인 대응, 국회청원, 5.18국민위원회를 확대·계승한 전국 298개 단체들의 연합체인 '5.18학살자 처벌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의 구성과 범국민단일안의 발표 등의 모든 활동이 5.18특별법을 이루어낸 힘이 되었다.

96년 총선과 97년 대선을 겨냥한 집권여당의 정략적 방향 수정이었다고는 하나 이것은 분명 범국민적인 불복종운동의 성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로써 과거인권문제가 청산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지난

해 법원이 과거 인권침해에 대해 판결을 내린 것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회안전법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하한 것, 장기수들이 낸 헌법소원을 각하한 것 등은 반인륜적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제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법원은 이런 태도를 앞으로도 계속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귀영씨 조작간첩사건 문제에 대한 하급심 재심결정을 대법원이 뒤집은 것도 과거 인권유린에 대한 단죄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0) 경제개발 우선 정책이 낳은 비극들(대형사고)

94년에 이어 95년 한해 동안에도 대형참사들이 잇따랐다. 4월29일의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건으로 젊은 학생들을 포함해 101명이 죽어갔다. 또, 6월29일에는 단일사고로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라는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로 501명이 죽었고, 부상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이 대형사고들은 개발독재가 낳은 압당한 귀결을 극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런 대형사고들의 발생으로 안전불감증, 또는 성장제일주의, 체계적인 재난구조의 문제가 광범하게 지적되었다.

인권의 측면에서 한국형 경제모델을 인간중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이처럼 웅변으로 증명한 사건은 없을 것이다.

11) 언론의 반인권적 행태

95년은 언론의 하이어나적인 속성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5.18문제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별 비판없이 받아들였던 대다수 언론들, 5.18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적인 투쟁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했던 언론들이 대통령의 방침 변경 한 마디에 먹이를 만난 하이어나처럼 이 문제를 선정적으로 제기했다. 과거 신군부의 권력 찬탈을 온갖 미사여구로 미화했던 언론들은 한 마디의 반성도 없이 이제는 신군부의 내란과 반란 혐의를 적극적으로 비난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런 기회주의를 본질로 언론이 청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민주적, 인권적 발전은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다.

95년 언론들은 공안사건 보도에서 과거와 다름없이 사실 확인없이 공안당국의 발표를 그대로 옮겨 실었다. 샘사건, 희망새 사건, 부부 유학생 간첩단 사건 등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와 법원의 정정보도 게재 등의 판결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들은 언론이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명예훼손과 인권침해의 방대함에 비춰 볼 때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많은 인권문제들에 대하여 95년의 언론은 여전히 외면하거나 왜곡하기 바빴다. 철거현장에서 일어난 폭력, 노동현장에 투입되는 공권력의 문제, 사회의 소외자들 문제 등을 이들은 무시하거나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다루려 하지 않았다.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언론의 관심은 여전히 부당하게 낮다.

12) 장애인

정부의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95년 장애인 연계고용제의 도입으로 공식적으로 포기되었다. 장애인 연계고용정책은 사실은 재벌기업에게 특혜만을 주고 실제 장애인들의 고용상의 문제, 생활상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다. 바로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분리정책이라는 흑평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통합교육을 위한 노력은 높이 살 만하다. 또한,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 장애여성의 문제가 부각된 점은 의미있는 일이다.

13) 동성애자

서구의 동성애자 영화의 대량 수입 등 동성애 문화의 보편화가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6월 동성애자들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를 결성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었다. 95년에 동성애자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사회에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선언하고 나섰다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동성애자들은 철저하게 외면 당하다 결국은 삶을 포기하고야 마는 자신들의 인권문제를 들고 나왔지만, 아직 현실은 그들에 대한 불온한 눈길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14) 어린이의 문제

95년 3월15일 유엔 아동권위원회에 민간단체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기 위해 '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의'가 결성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이다. 21개의 아동, 교육,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11월에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조약 민간보고서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심의과정에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96년 1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권고를 내릴 것으로 보이며 이 결과는 향후 어린이 권리 확보운동의 중요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95년은 중요한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영역이 "보이기 시작한" 해였다.

3. 결어-96년 인권상황 전망

95년 인권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한편에서는 15년 동안 유보되어왔던 신군부의 쿠데타와 내란·학살에 대한 청산작업이 시작된 반면 또 한편에서는 기층민중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노골화되었다. 과거청산은 이제 시작이고 김영삼정권의 정략적인 수단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많아 불안하기 이를 데 없으나 이런 흐름은 일단 시작된 이상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일이 진행되는 한편에서는 민중

들의 생존권에 대한 집중적인 탄압과 정치상황의 필요에 따라 자행된 국가보안법 구속 사건들이 줄을 이었다. 이에 따라 반인권적 구조는 더욱 강화되었다.

95년에는 국제사회의 비판도 점차 강도가 높아졌던 한 해였다. 2월에 열린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 앰네스티의 국가보안법 철폐 요구가 있었으며, 유엔인권이사회 회의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국내문제로는 처음으로 방문,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국내의 인권단체들도 국가보안법 문제와 노동권 문제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상황을 알리기에 노력했다. 특히 11월 서울서 열린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은 탈냉전 시대에서 국가안보를 넘어 인간안보의 문제로 방향을 전환해가는 국제적인 조류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주었다.

95년 정부의 인권정책 자체가 앞서와 같이 자본에 대한 노골적인 편들기와 함께 전지구적 차원에서 몇 안되는 '냉전의 섬'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조금의 진보적인 움직임은 이 본질을 부정하기에는 아주 미미한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운동가 또는 인권단체들은 숨가쁘게 진행되는 상황에 쫓아가기 급급했을 뿐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는 못했다. 이것은 인권단체나 인권활동가의 역량의 부족과 연대활동의 형식화에 따른 문제일 것이다. 국제적인 인권운동의 흐름이 자유권을 넘어 사회권에 대한 본격적인 접근이 시작된 이때 우리는 아직도 몇몇 자유권 주제에 매달려 있을 뿐이다. 인권운동의 전문화와 대중화, 국제화라는 과제는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 인권단체나 활동가들의 대오각성이 따라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96년 3월에 열릴 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적인 인권운동은 사회권 등을 보다 폭넓게 구체적인 시각에서 인권개념을 자체에 수용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런 시야가 들어오기는 해도 그것을 한국의 상황에 맞게 소화해내고자 하는 절대 절명의 사명감은 부족하다.

96년 국내 인권상황을 전망하면, 먼저 5.6공을 비롯한 과거의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 요구 확산될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이는 총선이 끝난 후 정계재편의 과정과 맞물리면서 5.18문제나 과거청산의 범주와 강도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나, 어쨌건 '판도라 상자'와 같은 과거청산문제의 뚜껑을 열어젖힌 이상 과거 인권피해자들의 집요한 문제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다음으로는 노동권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이 격화될 것이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법 개정문제와 산재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철거민 등 기층민중들의 인권문제, 장애인, 여성, 어린이 등 인권의 약자들의 권리 주장이 총선과 맞물리면서 더욱 높아질 것이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거의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국가보안법을 정점으로 하는 냉전적 구조는 96년에도 온존되지 않은 채 사상·양심·의사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수단으로 여전히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등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국내외의

도전이 강화될 것이다.

이런 기본구도를 감안할 때 96년 인권운동은 과거청산 문제에 보다 활발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양심수와 국가보안법 문제를 넘어 사회운동 영역과 진전된 연대를 실현해야 한다. 97년 대선을 앞두고 정계가 일대 재편기에 접어들 96년의 인권상황은 나름대로 기본권을 확대강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도 있다. 평화와 민주주의, 인권은 21세기를 눈 앞에 보고 있는 인류 공통의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후퇴는 없다.

-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인권홍보실장)

<인권하루소식> 합본 V

펴낸날 · 96년 2월 13일

펴낸이 · 서준식

펴낸곳 · 안경운동사랑방

주소 140-150 서울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대표전화 715-9185 팩스 715-9185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값 1만원